

日本에 있어서의 仲裁制度의 現況과 展望

金 祥 淚*

< 目 次 >

- | | |
|-----------------|-----------------|
| I. 序論 | IV. 主要 仲裁機關의 概要 |
| II. 仲裁制度의 沿革 | V. 結語 — 앞으로의 展望 |
| III. 仲裁制度의 利用現況 | |

I. 序 論

日本에 있어서의 仲裁(arbitration)의 역사는 다음의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百年以上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西歐와 같이 日本에서도 仲裁가 裁判을 代身하는 有用한 紛爭解決手段으로서 널리 活用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現實이다. 그 原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要素를 생각할 수 있고 다음의 III에서 詳述하는 바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仲裁制度에 관한 國民의 認識 내지는 法意識에 起因하는 점이다. 즉 仲裁에 대한 日本의 國民意識으로서, 日本에 전수된 仲裁制度는 自主的 解決과 強硬的 解決의 面이라는 두가지 要素중에서 自主的 解決의 要素가 보다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데 비해, 日本의 法意識은 人間關係가 어느 정도 法的 意味를 갖고 있는 規範인 社會의 規

* 日本 名古屋大學 專任講師, 法學博士

範에 의해 콘트롤된다는 思考方式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다.¹⁾ 따라서 日本에서는 當事者の 合意에 의해 私的 裁判所를 創設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 代身에 既存의 社會的 権威者에게 解決을 依頼하는 것에 익숙하여²⁾ 裁判所로부터의 逃避라고 할 경우에 西歐에서는 仲裁가 想起되지만 日本에서는 調停制度로 移行한다.³⁾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紛爭의 多發에 따른 ADR에의 注目등으로 仲裁制度에 관한 多角的인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仲裁制度의 不振에 관한 여러 角度에서의 分析에 뒷받침된 仲裁制度 活性化에의 努力이 傾注되어가고 있다. 早晚間 이러한 研究가 結實을 이루어 日本에서도 仲裁가 紛爭解决制度로서 脊梁을 받아 널리 活用되는 時代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 日本과 類似한 法制度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仲裁制度는 그다지 利用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日本의 仲裁에 관한 制度의 侧面을 研究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仲裁制度의 活性化등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도 參考되는 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以下 日本의 仲裁制度의 現況과 展望을 논하는 本稿는 仲裁制度의 沿革, 仲裁制度의 利用現況, 主要 仲裁機關의 概要, 結語로서 약으로의 展望의 順으로 다루어 나가기로 하겠다.

II. 仲裁制度의 沿革

日本에 있어서의 仲裁制度의 始初는 明治民事訴訟法以前 그 前時代인 德川時代에서부터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이는 社會事實로서 본 경우의 仲裁 그 自體로서 德川時代의 五人組에서 이루어진 内濟 — 特히 個人間의 民事紛爭에 대해 「은밀히 서로 解決한다」(内久にて相濟ます)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内濟에 대해서는

1) 後掲文獻②19면 以下, 이것은 日本에 있어서의 當事者間의 和解를 基本으로 하는 調停制度의 盛況을 間接的으로 表現하는 것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 調停에 있어서도 規範意識의 定着은 必要하고 調停과 仲裁를 뒷받침하는 基盤에는 共通點이 있다고 主張되어지고 있다(後掲文獻②19면 以下).

2) 後掲文獻①3면 以下.

3) 後掲文獻②19면 以下. 따라서 仲裁機關이 이미 存在하고 이에 대해 社會的 評價가 権威로 까지 높여지게 되면 國民은 이를 잘 利用하게 될 것이고 또한 仲裁가 存在하는 理由도 明白해질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後掲文獻①3면)

그것을 仲裁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紛爭의 해결을 訴訟에 의하지 않고 피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말하는 경우에 仲裁라 할 수 있으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西歐의 仲裁와도 다르고 明治 民事 訴訟法상의 仲裁編과의 關聯도 없다고 評價되고 있다.⁴⁾

그 후 明治期에 들어와 明治民事訴訟法의 仲裁編制定 前에도 成功은 하지 않았지만 注目할만한 努力으로서, 株式去來를 둘러싼 紛爭의 仲裁에 의한 解決을 導入하려는 試圖가 있었다.⁵⁾ 즉 明治民事訴訟法 制定施行 以前인 1887年(明治20年) 5月 14日, 勅令11號의 去來所條例(소위 말하는 부르스條例)에 의한 仲裁의 試圖가 그 것이다. 同條例가 制定되기 전까지는 有價證券의 流通의 具體化를 기하기 위해 個人株式去來所를 模範으로 한 株式去來條例가 1874年에, 다음해인 1875年에 米穀去來에 관한 米穀相場會社創立準則이 각각 制定되었다.

그러나 兩法令은 當時의 實情에 適合하지 않았기 때문에 1882年에 美國 商會所條例에 비슷한 株式去來所條例를 發布하였지만 이 또한 實情에 맞지 않았다. 거기서 또다시 1887년에 發布하게 된 것이 去來所條例(부르스條例)이다. 프랑스의 부르스條例를 模範으로 한 本去來所條例는 同條例의 第6장(第30내지 第32)에 「去來所에서 이루어진 買賣去來에 관해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는 委員에게 申告하여 仲裁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常置委員의 多數決에 의해 그 紛爭을 仲裁」하고 同仲裁에 대해서는 「法律上의 見解에 관한 것을 除外하고는 裁判所에 上訴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仲裁에 의한 紛爭解決의 態度를 明白히 表明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制度上の 不備가 있었고 이후에 制定되는 明治民事訴訟法上의 仲裁規定과의 조정도 必要하였을 것이지만, 어쨌든 또 다시 實情에 附合치 않는다고 하여 本去來所條例의 施行도 延期되었다. 그 위에 그 後에 制定된 本去來所法에는 仲裁에 관한 規定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民事訴訟法이 制定되었기 때문이다. 結局 成功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당시의 政府一部分에서 仲裁의 採用에 보여준 크나큰 热意를 觀取할 수 있고 仲裁에 바라는 期待, 热意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評價받고 있다.⁶⁾

곧 이어서 日本에 있어서의 西歐型 近代的 仲裁制度의 導入은 1890年 4月 21일의 明

4) 後揭文獻①17~18면.

5) 以下 明治初期의 株式去來를 둘러싼 紛爭의 仲裁에 의한 解決의 試圖에 대해서는 後揭文獻 ③10면 以下 參照.

6) 後揭文獻③11명, 後揭文獻②8면.

治民事訴訟法의 仲裁編의 制定에 의한다. 元來 明治民事訴訟法의 始初가 되는 테호草案에는 仲裁節次의 規定이 없었는데 급기 獨逸民事訴訟法의 仲裁節次의 規定을 翻譯하여 插入된 것이 明治民事訴訟法의 仲裁編이다. 테호草案에 仲裁規定이 없었던 理由⁷⁾에 대해서는 仲裁法이라는 單行法으로서 制定해야 한다고 判斷한 점, 獨逸은 聯邦國家이기 때문에 란트法域間의 調整을 위한 仲裁規定의 採擇이 必要하지만 日本은 聯邦國家가 아니므로 不要하고 諸法典의 編制가 極度로 재촉된 점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⁸⁾ 이에 비해 獨逸民事訴訟法의 仲裁規定을 급기 받아 드린 理由로서는 獨逸法을 繼受함에 있어서 仲裁規定을 除外하는 것은 常識의으로 이상한 점, 仲裁는 國際紛爭의 解決에 有效適切하고 聯邦이 아닌 國家도 必要한 점, 및 當時의 政府內에 部分的으로 仲裁에 의한 紛爭解決의 理想이 있었다는 점에 起因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仲裁節次의 導入은 우선 테호「訴訟法草案」을 根據로 舊案이라 불려지는 草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當時의 獨逸民事訴訟法 第10編의 規定의 日譯을 그대로 插入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結局 두 條文의 部分 修正을 거쳐서 明治民事訴訟法 第8編의 仲裁節次가 된다고 하는 過程을 거쳤다. 그러나 明治民事訴訟法上의 仲裁規定에 대해서는 充分히 檢討하기 보다 하루라도 빨리 成立시키기 위해 制定된 것이라고 解釋되어지고 있다.⁹⁾

그러나 위와 같이 仲裁法이 制定되어졌다고는 하지만 明治期의 仲裁의 實情을 알려주는 資料는 거의 없고 特히 現在紛爭의 ad hoc仲裁는 絶無하였다.¹⁰⁾또한 將來紛爭에 대한 ad hoc仲裁는 두가지 事例의 報告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ad hoc仲裁의 不振은 주로 仲裁人選定의 困難함에 의한다. 다른 한편 機關仲裁로서는 1892年의 日本海運業同盟會가 있지만 그 實情을 보여주는 資料도 明白하지 않다.

아울러 制定法에 관해서 말하자면 母法인 獨逸民事訴訟法의 仲裁規定의 數次에 걸친 改正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現在의 日本民事訴訟法 第8편의 仲裁節次에 관한 規定은 日本에서는 仲裁가 實質上 거의 없었다는 점 등으로 그 成立後 實質的인 改正 없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

7) 以下 後揭文獻⑨면 參照.

8) 그 외에 日本에는 西歐型 民事訴訟制度의 傳統이 없었고 그 亞型으로서의 仲裁節次를 받 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紛爭解決 法律制度를 複雜하게 하는 것이 외므로 결코 賢明하지 않다는 認識이 獨逸人의 눈에 있던 점에도 起因한다고 指摘되어지고 있다. (後揭文獻 3면)

9) 後揭文獻①18면 以下.

10) 明治期의 仲裁의 實情에 관해서는 後揭文獻③参照.

III. 仲裁制度의 利用現況

日本에 있어서의 紛爭解决制度로서의 仲裁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다지 利用되어지고 있지 않다. 조금 오래된 資料로 지금은 公表되고 있지 않지만 後揭<表1>은 仲裁判定의 既判力이나 執行力を 위한 法院에의 仲裁判定原本의 寄託數가 얼마나 적은지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仲裁判定의原本이 裁判所에 寄託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음의 IV에서 보는 각 仲裁機關에서 행하여지는 仲裁事件에 관한 統計資料를 보아도, 各 機關의 最近 5年間의 仲裁件數를 합친 數值은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건에서 300건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仲裁件數는 <表2>에서 보는 訴訟件數나 調停件數¹¹⁾와는 比較도 안되는 數值이다.

日本에 있어서의 民事紛爭의 半數以上은 裁判以外의 方法으로 處理되어지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仲裁制度가 不振한 理由는 무엇일까. 그 理由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되어지고 있다.¹³⁾

우선 가장 중요한 理由는 前述한 바와 같이 仲裁에 대한 國民의 意識의 問題이다. 仲裁에 관한 正確한 知識의 普及이 仲裁의 利用促進의 前提가 되는데 日本에서는 이 前提가 미숙한 段階이고,¹⁴⁾ 그 반면으로 仲裁를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 즉 裁判外紛爭解决制度로서는 仲裁보다도 調停을 選好하는 것이 國民의 意識인데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日本人의 法意識이 人間關係가 어느 정도 法的 意味를 갖고 있는 規範으로서의 客觀的 社會規範에 의해 콘트롤된다는 思考方式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⁵⁾ 또한 日本語로서의 仲裁라고 할 때는

11) 日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아 現存의 西歐諸國에 비해 소송의 利用度가 극단적으로 낮다고 말할 수 있고 인구가 一億을 넘는 經濟大國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것이 사실이다(後揭文獻4면).

12) 後揭文獻⑨4면. 특히 日本에서는 裁判이 되어도 和解로 종료되는 비율이 높은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13) 단 建設仲裁, 交通仲裁, 海運仲裁, 및 最近 생겨난 第二 東京辯護士會의 仲裁센타에서의 少額紛爭의 仲裁는 相對的으로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理由에 대해서는 當該 機關을 다룰 때에 보기로 하겠다.

14) 後揭文獻⑦63면.

15) 後揭文獻②19면 以下. 그 외에도 調停을 選好하는 原因에 대해 다음과 같이 指摘되고 있다(後揭文獻⑥314면). 仲裁의 成立의 基盤은 契約에 있는데 仲裁判定의 強制執行能力의 根據는 그 同法性에 있다. 이 同法의 品質을 높이는 것이 仲裁의 歷史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訴訟의 複雜함, 技術的的 正確, 時間이 걸림, 費用이 듦, 이라는 것에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訴訟을 回避하여 仲裁를 選擇한다는 것은 仲裁의 特性에 起因한다. 이 特性이 회박해지면 契約志向이라는 反動이 생기고 仲裁를 피해 調停을 선호하는 志向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指摘이다.

當事者 사이에 들어가 양쪽의 체면을 세우면서 和解시킨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¹⁶⁾

두 번째는 國民이 調停制度를 選好하는 遠因이기도 한 調停에 대한 國家側의 大幅的補助의 면 – 특히 法院內에 調停센타를 設置하여 裁判과 調停이 密接히 聯關되어 있는 면 – 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仲裁에 대한 國家측의 补助는 부족하고 그 것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 仲裁機關에 대한 主務官廳의 차이등의 問題가 있다고 指摘되어지고 있다.¹⁷⁾

세 번째는 法律家의 意識의 면으로 調停과 대비하여 볼 때 仲裁에 대한 司法制度측의 對應은 매우 냉담했다는 점이다.¹⁸⁾ 이 것은 仲裁制度의 特徵이기도 한 仲裁節次의 密行性, 專門性, 個別性이 仲裁制度가 內包하고 있는 問題點에 대한 學問의 研究의 障碍가 되고 法律家 특히 學者의 仲裁에의 關心을 소외시켜 仲裁研究의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점에 起因한다.¹⁹⁾

네 번째는 仲裁合意의 調達의 困難性이다. 즉 仲裁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仲裁合意의 存在가 原則的으로 不可缺한데 그 合意의 取得이 困難한 것은 紛爭解決의 關心의 차이로서, 雙方當事者가 紛爭解決에 同一한 關心을 갖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紛爭이 發生한 후의 仲裁合意는 거의 期待하기 힘들며 또한 그 것은 仲裁判定에 대한 不安全感 때문이다.^{20) 21)}

다섯 번째는 仲裁人에 관한 問題이다. 仲裁의 利用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中立, 公正한 仲裁人適格者를 늘리는 方策을 세워야만 하지만 常設仲裁機關에 의해 이 점이 어느 정도 克服된다고 해도 아직은 仲裁人適格者가 充分히 確保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다.²²⁾ 또한 仲裁人내지는 仲裁法院의 強制權限의 缺如에도 問題가 있다고 指摘되어지고 있다.²³⁾

여섯 번째는 仲裁 不振의 結果이지 直接的으로 關聯된 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既存의 仲裁法이 時代의 니즈에 맞지 않고 制定以來 한번도 實質的으로 改正됨이 없이 放置되

16) 後揭文獻 2면.

17) 後揭文獻④165면, 後揭文獻⑤83면 以下 [松浦]

18) 後揭文獻④159면 以下.

19) 後揭文獻④159~163면, 後揭文獻⑤83면 以下 [松浦]

20) 後揭文獻⑩153면 以下, 後揭文獻⑤99면 以下 [飯塚]

21) 그 때문에 合意調達에의 补完策으로서 緩和된 仲裁合意의 獲得으로 향하게 되어 仲裁合意의 標準約款化, 裁定을 내린 후에 그것에 拒否할 수 있다고 하는 片面的 仲裁合意의 利用, 不完全合意로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正當性의 补完으로서 緩和된 合意에 대한 節次的 칙령의 必要性이 생기고 더 나아가 本來의 柔軟性, 卽決性이라는 利點이喪失될 感慮가 있다(後揭文獻⑩157면 이하).

22) 後揭文獻⑦63면 이하.

23) 後揭文獻⑤99면 이하 [飯塚]

어 왔다는 점에도 仲裁 不振의 理由가 있다고 생각된다.²⁴⁾

IV. 主要 仲裁機關의 概要

日本에 있어서 仲裁가 행하여지는 것은 거의 常設仲裁機關에 의해서이고 ad hoc 仲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편이다. 以下是 現在 日本에서 常設仲裁機關으로서 仲裁를 행하고 있는 일곱개의 機關의 概要를 보고자 한다. 일곱개의 仲裁機關에 대해서는 常設公的(行政型) 仲裁機關과 常設私的(民間型) 仲裁機關의 두가지로 區分하는 것이 普通이다.²⁵⁾ 이 중에서 前者에 속하는 것은 公害等調整委員會, 中央勞動委員會, 및 中央建設工事紛爭審查會이다. 이에 대해

後者에 속하는 機關으로서는 交通事故紛爭處理센타, 第2東京辯護士會仲裁센타, 國際商事仲裁協會, 및 日本海運集會所의 네개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일곱개 仲裁機關의 일반적 特徵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다.²⁶⁾ 즉 仲裁機關의 대부분이 專門型이라는 점, 外國에 비해 仲裁件數가 적은 점, 相談이나 苦情處理의 件數는 매우 많은 점, 및 比較的 仲裁件數가 많은 分野에서는 仲裁條項을 取得하기 쉬운 점(예를 들면 片面의 仲裁로서의 裁定)이 그 것이다. 그 외에도 裁判의 경우에도 그려하지만 仲裁申請이 있은 후에도 仲裁判定이 아닌 和解에 의해 處理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指摘할 수 있다.

1. 公害等 調整委員會

(1) 本委員會는 國家行政組織法 第3條2항의 規定에 기하여 設立된 總理府의 外局이다. 本中央本部 이외에도 1991年 現在 47개의 都道府縣 중에서 38개의 都道府縣에 公害審查會가 設置되어 있다. 1967年에 公害에 관한 法制度를 整備할 必要性이 要請되어 公害對策基本法이 制定된 후, 계속해서 1970年에 制定된 公害紛爭處理法에 의해 設置된

24) 아울러 특히 외국인이 東京仲裁를 주저하는 이유는 지명도의 저조, 東京에 信賴할 수 있는 仲裁人이 별로 없는 점, 節次의 準備나 審理에 있어서의 言語의 障害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後揭文獻 14 28면 이하).

25) 後揭文獻②14면 이하, 後揭文獻14~32면 이하.

26) 後揭文獻⑤95면 이하[飯叢]

것이 中央公害審查委員會였다. 이윽고 同委員會가 1972年에 土地調整委員會를 統合하여 생겨난 것이 公害等調整委員會이다.

(2) 本委員會의 紛爭處理方式은斡旋, 調停, 仲裁, 裁定(委員會만 가능), 苦情處理로 되어 있고 節次規定은 公害紛爭處理法이다.

(3) ① 仲裁는 原則的으로 當事者の 合意에 의한 三人의 仲裁委員으로 構成되는 仲裁委員會에 의해 행하여진다(公害紛爭處理法第39條1항). 仲裁는 當事者間의 民事上의 紛爭에 대해 法律的 判斷을 내리는 節次이므로 仲裁委員 중에서 적어도 一人은 辯護士 資格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면 안된다(同法제39條3항).

② 申請 方法은 다음에 드는 事項을 記載하고 申請人 또는 代表者 혹은 代理人이 記名捺印한 申請書를 提出해야만 한다(同法第26條, 公害紛爭의 處理등에 관한 規則第6條1항). 즉 當事者の 姓名 또는 代表者の 姓名 및 住居, 代理人 또는 代表者の 姓名 및 住居, 事業活動 其他 사람의 活動이 이루어지는 場所 및 被害가 發生한 場所, 仲裁를 구하는 事項 및 그 理由, 紛爭의 經過, 申請 年月日, 및 其他 仲裁를 하는데 參考가 되는 事項이다. 申請書에 添附해야만 하는 書類는 法定代理人에 의한 申請人 경우에는 戶籍謄本등의 法定代理人의 資格을 證明하는 資料, 申請인이 法人인 경우에는 그 當事者能力 및 代表者の 資格을 證明하는 商業登記簿原本등의 資料, 委任에 의한 代理人이 申請하는 경우에는 委任狀, 및 代表者에 의한 申請의 경우에는 代表者選定書로 되어 있다. 또한 當事者の 한편에서 仲裁申請을 하는 경우에는 同法의 規定에 의한 仲裁付託의 合意를 證明하는 서명을 添附해야만 하고 合意에 의해 管轄을 정한 때에는 그 合意書도 添附해야만 한다(同規則第6條2항).

③ 仲裁節次에서는一般的으로 文書 또는 物件의 提出命令 및 出入検査가 認定되고 (同法第40條) 그 외에도 民事訴訟法 第8편의 仲裁節次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同法第41條). 仲裁人은 當事者를 審訊하고 參考人, 監定人을 審問하거나 하여 紛爭의 原因인 事實關係를 探知하고 仲裁判定을 作成한다. 仲裁判定은 仲裁判定書의 作成, 定本의 送達, 原本의 寄託에 의해 成立한다.

(4) 本委員會의 仲裁事件은 表<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創立이래 한전의 仲裁申請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각지방의 公害調查會에서의 仲裁事件은 表<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創立申請이 있었고 前者보다는 若干 많은 편이다. 아무튼 公害仲裁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2. 中央勞動委員會

(1) 勞動省의 外局으로서 設置된 中央勞動委員會는 그 活動에 대해 勞動大臣이 一般的 的 責任을 지고 豫算이나 事務局의 인사에 관해 그 監督을 받는다.

그러나 合意制의 行政委員會이기 때문에 그 性質上 勞動組合法 및 勞動關係調停法에 規定된 權限의行使에 대해서는 獨自的으로 할 수 있고 勞動大臣의 指揮監督을 받지 않는다. 1976年 3月 1일에 創設되었고 根據法은 勞動組合法第19條, 26條, 勞動省設置法第11條이다. 각지방에도 하나씩 地方勞動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2) 紛爭處理方式은 再審查, 幅旋, 調停, 仲裁로 構成되어 있다.

(3) ① 仲裁節次는 關係當事者雙方으로부터 申請이 있는 경우, 및 勞動協約에 정해진 바에 의해 關係當事者雙方 또는一方으로부터 申請이 있는 경우에 시작된다.

② 仲裁는 仲裁委員 三人에 의해 構成되는 仲裁委員會가 행한다. 仲裁委員은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또는 特別調整委員중에서 關係當事者가 合意에 의해 選定한 자를 會長이 指名한다. 關係當事者의 合意에 의한 選定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會長이 關係當事者의 意見을 듣고 指名한다. 仲裁委員會는 仲裁委員 二人以上이 出席하지 않으면 會議를 열어 議決할 수가 없다. 의사도 仲裁委員의 過半數로 決定된다. 또한 關係當事者가 각각 指名한 委員은 仲裁委員會의 同意를 얻고 그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③ 仲裁의 裁定은 書面에 의한다. 이 裁定은 勞動協約과 同一한 效力を 갖고 그 書面에는 效力發生의 期日도 記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效力を 갖기 때문에 仲裁開始條件은 關係當事者の 同意가 必要하고 仲裁委員의 選定에 관해서도 關係當事者の 同意가 必要한 점 등 仲裁節次는 幅旋이나 調停에 비해 嚴格하게 되어 있다.

(4) 仲裁事件은 中央, 地方勞動委員會 모두 적은 편이다. 中央勞動委員會에 있어서의 仲裁件數는 制度발족이래 1988年10月의 國營企業勞動委員會와 統合할 때까지 네건에 불과하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年에는 약간 불어나 아홉건의 仲裁事件이 있었다.

3. 中央建設工事紛爭審查會

(1) 本審查會는 1956年의 建設業法의 改正에 의해 同法第25條에 기하여 設置된 建設省의 附屬機關이다. 各地方에 한군데씩 支部가 必須으로 設置되어 있다.

(2) 紛爭處理方式은 幷旋, 調停, 仲裁, 相談이다.

(3) ① 當事者一方으로부터 仲裁가 申請되면 事務局은 申請書에 仲裁合意를 證明하는 書面이 添附되어 있는 가를 確認한 다음, 그 것을 受理한다. 그 다음 申請人, 添附書類, 證據書類를 제출하고 節次費用을 納付한 후에 審理에 들어 간다. 仲裁의 경우에는 當事者에게 擔當委員을 選定하는 機會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節次가 調停이나 幷旋과는 달리 添加된다.

② 當事者間에 擔當仲裁委員選定의 合意가 成立하면 그 性格을 審查會 앞으로의 書面으로 通知한다. 合意에 의한 選定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當事者는 각각 仲裁委員으로 指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의 성명을 書面으로 通知하게 된다. 한편 會長은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三人의 仲裁委員을 指名하고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각當事者の 意向을 감안하여 三人의 仲裁委員을 指名한다.

③ 審理에서는 仲裁委員이 當事者에 대해 事情聽取, 書面書證 提出의 提示를 하여 爭點을 整理한다. 일정한 爭點에 대해서는 當事者の 申請에 의거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事情聽取가 終了하여도 雙方當事者에게 和解의 機會를 부여하는 것이 普通이고 仲裁委員은 事情聽取가 終了할 때까지 제시한다. 만약 和解가 成립하면 和解書를 작성하고 和解내용을 趣旨로 하는 仲裁判定을 내린다. 和解가 成립하지 않으면 證據調查에 들어가며 그 것이 끝난 후 審理節次가 終了하고 仲裁判定이 내려진다. 그외에 節次가 진행중에도 當事者間의 자주적 解決때문에 仲裁申請이 取下되는 경우도 있다.

(4)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審查會에서 행하여지는 仲裁事件은前述한 두 機關에 비해 두배 이상이 된다. 一年에 20건에서 30건 정도여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公害仲裁나 勞動仲裁에 비하면 建設工事紛爭의 仲裁比率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理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解釋되어지고 있다.²⁷⁾ 즉 不法行爲型 紛爭의 仲裁契約의 締結이 困難한 것에 반해 契約型 紛爭의 경우에는 契約書 仲裁條項을 插入해 두는 것이 가능하고 實際로 建設工事都綜契約에는 仲裁條項이 모델條項으로서 插入되어 있기 때문

27) 後揭文獻 12~41면.

이다.

4. 交通事故紛爭處理센타

(1) 本센타의 前身은 1974年 2月에 交通事故紛爭의 處理를 위해 發足된 交通事故仲裁委員會이다. 同委員會가 계속해서 1978年3月에 組織을 強化하고 規模를 擴大하기 위해서 總理府의 許可를 얻어 財團法人으로서 名稱을 바꿔 設立된 것이 本센타이다. 現在 中立公正한 立場으로 活動하고 있고 本部 이외에 各 高等裁判所 所在都市에 支부가 設置되어 있다.

(2) 業務規定에 따라 相談, 幣旋, 調停, 仲裁라는 紛爭處理方式을 취하고 있다.

(3) ① 本센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審査란 以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片面的 仲裁를 가리키는 것이다. 嘴託辯護士에 의한 和解의 幣旋이 成立하지 않으면 審査를 원하는 當事者의 要望에 따라 審査를 하게 된다.

② 審査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委嘱한 審査員 三人以上으로 構成하는 審査會가 當該事案에 대해 當事者雙方, 保險會社, 當該囑託辯護士 등으로부터 直接說明, 意見을 듣거나 實況을 檢分調查하여 當事者の 責任 및 損害額의 算定 등에 관해 法律의 意見(이를 裁定이라 한다)을 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③ 被害者は 裁定의 受諾與否를 자유롭게 決定할 수 있고 만약 裁定에 不滿이라고 한다면 訴訟을 提起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裁定에 同意하면 保險會社는 制定에 同意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해져 있다. 즉 社團法人 日本損害保險協會에 所屬된 保險會社와 同센타와의 協定에 의거한 것이고, 또한 外國損害保險協會나 全國共濟 農業協同組合聯合會, 全國勞動者共濟生活協同組合 共濟聯合會도 이에 따르고 있다. 審査에 同意하면 裁定의 趣旨에 따른 示談(私法上의 和解)이 成立하게 된다. 審査節次는 어디까지나 任意의인 것이고 被害者 또는 加害者が 裁定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審査不能으로서 中止하는 것이 實情이다.

(4) 本센타의 仲裁件數는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年以後 每年100건에서 200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仲裁件數가 많은 理由로서는 仲裁合意를 必要로 하지 않는 소위 片面的 仲裁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裁定이 내려져도 그 것이 바로 拘束力を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公權力의 發生은 우선 當事者の 合意를前提로 하고 있는 점에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²⁸⁾

28) 後掲文獻⑤97면[飯塚]

5. 第2 東京辯護士會 仲裁센타

(1) 日本에서는 地方法院事件의 80% 가까이가 辯護士代理이지만 簡易法院事件에 있어서의 辯護士代理는 12%내지 17%정도이고 少額事件에는 辯護士가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少額紛爭은 簡易하게 解決하는 機關이라고 여겨진 簡易法院이 小型地方法院化 되어 있고, 그 곳에서의 節次도 複雜하고 어려우며 解決에 必要한 事件 또한 龙大한 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少額紛爭에 대한 具體的 解決手段을 提供하는 것은 辯護士내지는 辯護士會에 있어서 시급한 課題였고 市民의 少額紛爭을 주된 對象으로 하여 이를 迅速適正하게 仲裁라고 하는 紛爭處理方法으로 解決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0年3月에 설립된 것이 本센타이다. 現在 本센타는 節次의 簡素化와 費用의 저렴화에 힘쓰고 있다.

(2) 相談, 仲裁, 和解, 幫旋에 의한 紛爭解決을 행하고 있다.

(3) ① 仲裁는 法律 相談센타의 相談所에서 仲裁에 適合한 事件에 대해 仲裁의 申請을 勸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仲裁의 申請은 申請시에 申請人으로부터 備置된 仲裁合意書에 署名捺印을 받고 申請書와 함께 提出한다. 후일 相對方이 仲裁에 응한다고 하는 回答을 얻게 되면 이에 상대방이 署名捺印하고 仲裁인이 계속해서 서명날인하여 仲裁契約이 完成한다. 그 다음으로 仲裁費用을 納付하게 된다.

② 仲裁人은 名單에 기재된 仲裁人 候補者로부터 選定된다. 우선은 同候補者중에서 仲裁人 豫定者를 會長이 指名하고 상대방이 仲裁合意에 응했을 때에 公式으로 仲裁인이 되어 審理를 擔當한다.

③ 審理는 第二東京辯護士會에서 非公開로 이루어지며 一回의 審理時間은 2시간을 豫定하고 있다. 審理는 當事者에 대한 審尋이 중심이 된다. 전체적 審理기간은 대략 2주일 정도가 目標이다. 심리가 종결하면 仲裁判定이 시작되지만 仲裁判定前에도 和解를 권한다. 和解가 성립한 경우에는 和解內容을 仲裁判定의 주문으로 하는 仲裁判定書의 作成도 可能하다.

(4) 本센타에서의 仲裁件數는 表<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設立한지 3년도 안된 사이에 200건을 超過하여 前述한 仲裁機關에 비해 예상以上의 盛況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本센타가 成功하고 있는 理由로서는 法律 相談과의 連繫에 수반하여 適合한 事件의 選擇이 가능한 점, 申請의 書式등의 具體化, 仲裁에 관한 案內書나 仲裁合意 成立의 증

개에 그 促進을 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²⁹⁾ 또한 辯護士會가 主導하여 少額紛爭의 簡易迅速한 解決이라고 하는 當事者の 나즈에 부응하고 있는 점에도 成功의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表<8-2>는 상대방이 仲裁合意에 응하는 比率을, 表<8-3>은 仲裁事件의 處理內容의 比率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6. 國際商事仲裁協會

(1) 日本商工會議所로부터 紛爭處理의 包括的 受託을 받은 團體가 本 協會이다. 元來 1950年3月에 日本商工會議所의 한 委員會라는 國際商事仲裁委員會로서 設立되었지만 1953年 8月에 社團法人으로 獨立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2) 仲裁, 調停, 幹旋, 相談에 의한 紛爭處理를 행하고 있다.

(3) ① 仲裁申請을 하려고 하는 자는 協會의 각 事務所에 仲裁費用과 必要書類를 提出한다. 協會가 仲裁申請을 受理하였을 때는 雙方當事者에게 仲裁申請의 受理通知를 발하고 選定된 仲裁人에 의해 審理節次가 開始된다.

② 仲裁人の 資格에 관한 特定의 提案은 없고 當該仲裁事件에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자는 仲裁人이 될 수 없다. 仲裁人の 수와 選定方法은 當事者の 合意에 의한다. 特정기간내에 仲裁人이 選定되지 못하면 協會가 選定하게끔 된다.

③ 審理는 當事者が 審問節次를 행하지 않는 것에 合意하게 되면 書面에 의한 節次를 취한다. 審問節次는 非公開이고 事件에 직접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자 이외에는 仲裁法院의 許可를 얻어야만 出席할수 있다. 當事者の一方이 通知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節次에 缺席한 경우에는 仲裁法院은 節次를 繼行할 수도 있다. 仲裁法院은 審理節次를 終結한 후 35일이내에 仲裁判定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仲裁節次 도중에 當事者間의 和解가 성립한 경우에는 當事者雙方 또는 一方의 要請에 의해 또한 仲裁法院이 상당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和解內容을 仲裁判定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4) 本協會의 仲裁件數는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申請件數가 10건 이내이고 審理중인 事件이 20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民間型仲裁機關중에서는 가장 적고 建設工事紛爭의 仲裁件數와 비슷하다. 仲裁件數가 적은 理由로서는 다음과 같이 分析되어지고 있다.³⁰⁾

29) 後掲文獻⑧8면.

30) 後掲文獻 12 二106면.

즉 모든 契約에 仲裁조항이挿入되지 않고挿入되었다고 하여도 本機關을 指定하는 것이 아닌 점, 繼續的 去來關係에 있는 當事者 사이에서는 仲裁를 기대하기 힘든 점, 幛旋制度가 효과적으로 機能되고 있고 調停은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점, 및 民間型仲裁機關의 共通된 特徵으로서 機關의 收支가 사업을 營爲해 나가는데 充分하지 않은 점이다. 아울러 幛旋件數는 200건 以上으로 많은 편이다.

7. 日本海運集會所

(1) 本集會所의 歷史는 1921年 9月에 발족된 株式會社 神戶海運集會所에서 시작된다. 同集會에는 1926年에 仲裁部가 設置된 후 1933年에 集會所의 諸業務가 널리 海運關聯全業界의 發展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株式會社 神戶海運集會所를 解散하고 公益法人으로서의 오늘날의 日本海運集會所가 發足되었다.

(2) 紛爭處理方式은 仲裁(調停을 包含), 鑑定, 證明, 指導助言, 相談, 幛旋으로 이루어져 있다.

(3) ① 仲裁合意는 集會所書式中에 仲裁約款이挿入되어 있기 때문에 集會所書式의 定着이 仲裁를 늘리는 原因이 되었다. 請求金額이 1500萬엔以下の 紛爭으로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簡易仲裁를 하고 그 이외에는 普通仲裁가 된다. 簡易仲裁는 節次면에서의 簡素化때문에 3, 4개月내에 仲裁가 終了한다.

② 仲裁人에 대해서는 當事者에게 그 選定權을 주고 있지 않다. 集會所의 海事仲裁委員會가 仲裁人 候補者를 提示한 다음 當事者の 同意를 尊重해서 仲裁人을 選定한다. 仲裁法院을 仲裁人會라 부르고 있고 그 數는 거의가 三人이다.

③ 仲裁申請을 受理하고 仲裁비용을 납부한 후 選定된 仲裁人會에 의해 審理가 開始된다. 審理는 當事者審尋에 重點을 두고 있다. 審尋의 方法은 關係當事者の 同席이 原則이고 第三者의 傍聽은 일체 認定되지 않는다. 審尋이 終結된 후 30日이내에 原則의으로 仲裁判定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仲裁事案中에서 仲裁節次 도중에 仲裁人에 의한 和解의 幛旋으로 仲裁가 終了되는 例는 7割 정도이다. 仲裁判定은 當事者の 反對意思가 없는 한 公表할 수 있고 集會所의 機關誌에 定期的으로 公表되고 있다.

(4) 本集會所에서의 仲裁件數는 表<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前述한 國際商事仲裁協會보다는 많은 편이다. 相對的으로 仲裁件數가 많은 理由로서는 海運業界의 進就自治의 精神, 海運實務에 관해서는 國家의 裁判所보다도 자신들이 通達해 있는 점, 및 仲

裁條項의 服務標準契約書式의 制定普及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³¹⁾ 아울러 表<10-2>는 本集會所에서 이루어지는 仲裁事件內容의 分類表이다.

V. 結語 — 앞으로의 展望

以上 日本의 仲裁制度의 現況을 살펴 보고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 仲裁制度가 오늘날 까지 不振하다는 점을 指摘하였다. 不振의 요인은 이를 改善하면 活性화를 위한 對策이 되는 것은 물론인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多樣한 時代의 要請에 따른 仲裁制度의 改善내지는 仲裁研究의 深化를 促求하는 氣運이 높아지고 있다. 즉 仲裁에 의한 紛爭解決의 實際的 必要性을 높이는 要因으로서 國際化時代에 수반된 國際去來, 國際交流의 急速한 發展, 現代型紛爭의 多發이라고 하는 紛爭의 增大, 多樣化에 따른 ADR의 再評價와 裁判 外紛爭處理制度의 急展開, 仲裁에 관한 條約의 發達, UNCITRAL 仲裁規則과 模範法의 制定, 世界各國에 있어서의 仲裁法의 改正, 國際仲裁의 指導的 役割, 仲裁에의 期待로서 특히 東京仲裁에의 期待등에 있어서 仲裁制度의 改善내지는 仲裁研究의 深化를 促求하는 要因이 있다고 指摘되고 있다.³²⁾ 더 나아가 調停制度의 盛況에 관해서도 調停과 比較한 경우의 仲裁의 利點으로서 法的 基準을 浸透시켜 正義의 總量을 增大시킨다고 하는 作用의 면에서는 仲裁의 役割이 調停을 앞지른다는 점에 注目해야 한다는 主張³³⁾도 있다.

이와 같은 要因에 促求되어 日本에서는 仲裁制度가 새로운 時代에 들려고 있다고 評價할 수 있다. 仲裁制度의 課題로서 여러 研究가 集結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諸點에 관해서이다. 즉 仲裁法의 全面的 改定, 特別仲裁制度의 導入可能性의 檢討, 仲裁節次의 信賴性의 確保, 適合한 國際仲裁節次의 探究, 仲裁人の 選定내지는 人數에 관한 檢討, 仲裁人の 質量에 걸친 充實, 仲裁節次의 自覺的 分化의 推進, 紛爭調停의 法律關係,

31) 後揭文獻 12 二111면.

32) 後揭文獻⑤84면 이하[松浦], 後揭文獻④167면 이하. 그 외에 後揭文獻⑧

33) 後揭文獻②25면. 특히 國際商事紛爭의 경우 西歐人이 日本의 調停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 裁判外紛爭處理로서의 仲裁, 裁定節次도 基本的으로는 調停節次에 가까운 것으로 運用되어야 한다는 見解도 있다(後揭文獻 13 57면). 이는 當事者の 主體的 紛爭解决의 意慾을 증시하여 主體的 交涉에 의한 남들가는 合意의 到達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第3者機關의 역할은 自立的 交涉의 活性화에 있다고하는 견해이다.

創設的인 内容의 仲裁判定을 내릴 可能性의 推進, 仲裁條項의 活用이라고 하는 점이다.³⁴⁾ 위와 같은 事項 中에서 특히 仲裁法에 관해서는 이미 仲裁의 法制的 側面을 커버하는 精銳研究者에 의한 改正試案이 公表되어 있는 상태이다.³⁵⁾ 또한 國民이 仲裁를 잘 利用하고 仲裁가 存在하는 理由가 明確해지는 주된 要件이 되는 仲裁人 頑強자의 確保나 仲裁節次 또는 仲裁機關에의 信賴養成에 대해서도 第2 東京辯護士會 仲裁센타의 盛況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仲裁機關의 擴充이나 公正하고 信賴할 수 있는 確保에 充分히 對處할 수 있게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³⁶⁾ 그위에 仲裁合意의 調達의 困難함에 대해서도 仲裁合意가 없다해도 廣義의 仲裁로서 概念規定이 가능할테고 이에 의해 仲裁制度는 廣範圍한 사정을 解決할 수 있게 되어 仲裁研究의 活力, 仲裁制度의 多樣化 活性화를 期待할 수 있다고도 主張되어지고 있다.³⁷⁾ 이와 같은 것은 交通事故紛爭處理센타에서의 裁定의 利用度가 높은 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例證되어 있는 바이다.

仲裁制度가 활발히 利用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仲裁制度의 諸問題에 對處하는 仲裁研究의 深化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必要한 것은 仲裁에의 악세스를 確保하기 위한 仲裁機關의 擴充이다. 이러한 두가지 점에 관해서는 繼續的인 努力이 必要하겠지만 日本에서는 現在 仲裁研究의 實情 – 仲裁研究의 質量에 있어서의 高水準이나 특히 辯護士會의 仲裁機關設立에의 努力에 비추어 本軌道에 접어 들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日本에서는 仲裁내지는 紛爭解決制度全體가 크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특히 國際商事紛爭의 仲裁地로서의 東京仲裁센타에 거는 期待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仲裁가 활발히 利用된다고 하여도 調停은 日本人의 國民性에 깊숙히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調停制度가 퇴조할리는 없고 장래에는 訴訟, 仲裁, 調停의 三者간의 새로운 밸런스의 創造에 日本 民事紛爭制度의 賀로가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³⁸⁾

어쨌건 仲裁研究의 深化에 따라 日本에서의 仲裁制度도 國內國際紛爭을 불문하고 所期의 成果를 올리면서 활발히 利用되리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34) 後揭文獻②22면 이하.

35) 松浦教授의 仲裁法改正試案에 관한 講演原稿 參照.

36) 각 지방의 辯護士會에서도 제2 東京辯護士會와 같이 중재센타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民間型 仲裁機關의 財政의 면에서도 보완책이 推進되고 있다.

37) 後揭文獻②11면이하.

38) 後揭文獻 5면.

< 日本의 仲裁制度에 관한 參考文獻 >

仲裁에 관한 日本語文獻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菊井維大=松浦馨「仲裁邦語文獻目錄・追補」法律 時報52권 11호 162頁・54권 8號 189頁(1980年・1982年)있고 그 때까지의 문헌이 綱羅되어 있어 本稿에서도 그 곳에 실려 있는 문헌은 인용하지 않았다. 그 외의 문헌안내로서는 國際的仲裁가 관한 것이 중심인 澤木敬郎=青山善充・國際民事訴訟法の理論(有斐閣・1987)의 권말 문헌목록 15頁이 있다. 以下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헌을 소개하는 것이다.

(1) 仲裁法 관한 개설서·주석서.

- ① 小山昇・仲裁法[新版](有斐閣・1983).

小島武司=高桑昭・注解仲裁法(青林書院・1988)(本書 중 本稿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② 小島「日本における仲裁制度の沿革展望」3頁이고, 行政型仲裁機關에 관한 解說도 실려 있다.

(2) 仲裁制度이나 그 연혁에 관한 것.

- ③ 菊井維大「明治期仲裁管見」法律 時報54권8號(1982)8頁.

- ④ 三ヶ月草「仲裁研究の現状と課題」 同・民事訴訟法研究第九卷(1984)153항 (초출・法律 時報54권 8號(1982)).

三ヶ月草「國際仲裁」同・民事訴訟法研究第九卷(1984)183항(초출・新・實務民事 訴訟講座7(1982)).

- ⑤ 松浦馨(司會)「シンホシウム・仲裁」民事訴訟雑誌36號(1990)81頁.

- ⑥ 小山昇「仲裁の法理」講座民事訴訟1(1934)289頁.

- ⑦ 小山昇「仲裁制度の現状と問題點」民事訴訟法の爭點[新版](1988)62頁.

- ⑧ 松浦馨「東南アジア仲裁の特徴と問題點一その・香港」法政論集(名古屋大學)141號(1009)105頁.

(3) 裁判外紛爭解决과 仲裁에 관한 것

- ⑨ 小島武司「裁判外 紛争處理機関の 理論的法政策的検討」判例タイムス 728號(1990)4頁.

小島武司「裁判外紛爭處理制度の根底にあるもの」シュリスト971號(1991)169頁.

⑩ 棚瀬孝雄「裁判外の紛争處理機關」新・實務民事訴訟論座1(1981)123頁.

三ヶ月草「日本における訴訟・仲裁・調停」J C A ジャナル39卷 2號(1992)2頁.

青山善充「裁判外紛争處理機關の現状と展望(一)(二) 完」自由と正義32卷 9號(32頁)12號(102頁)(1981).

吉村徳重「裁判外紛争處理の現状と將來」民事訴訟法の爭點〔新版〕(1988)54頁

(4) 公害紛争의 仲裁에 관한 것.

深山卓也「公害等調整委員會」判例タイムス728號(1990)34頁.

松浦馨「公害仲裁手續の現状と問題點ノート」法政論集(名古屋大學)88號

(1981)356頁「特集・公害紛争處理制度の回顧展望」1008號(1992)10頁以下.

(5) 勞動紛争의 仲裁에 관한 것

福田俊男「中央勞動委員會」判例タイムス728號(1990)84頁.

(6) 建設工事紛争의 仲裁에 관한 것

原後山治「建設工事紛争審査會の運営とコスト」自由と正義 41卷12號 (1990)59頁

中村貴志「中大建設工事紛争審査會」判例タイムス728號(1990)107號.

原後山治「建設工事紛争仲裁制度の實情と諸問題」日辯聯研修叢書・現代法律 實務の諸問題(下) <平成元年度> (1990)291頁.

(7) 交通事故紛争의 仲裁에 관한 것

八島淳一郎「(財)交通事故紛争處理センタについて」自由と正義41卷12號(1990)50頁.

二宮丑之助「財團法人 交通事故紛争處理センタ」判例タイムス728號(1990)171頁

吉岡進「交通事故紛争處理センタ 現状と問題點」シユリスト 増刊 総合特輯 42號(1986)13頁.

松代隆「交通事故 紛争の 訴訟外處理 — 交通事故紛争處理センタの 場合一」

シユリスト833號 (1985)20頁.

(8) 第二東京辯護士會仲裁センタ의 仲裁에 관한 것.

大川宏「二辯仲裁センタについて」自由と正義41卷12號(1990)70頁.

大川宏「第二東京辯護士會仲裁センタ」判例タイムス728號(1990)181頁. 「少額事件仲裁制度導入に関する シンポジウム少額事件處理の現状の改善策を考える」判例721號 (1990)4頁.

大川宏「第二東京辯護士會の 仲裁センタ 設立の概要」N B L 450號 (1990)30頁

大川宏「出足好調!二辯 仲裁センタ」法學教室123號(1990)9頁.

(9) 商事紛爭의 仲裁에 관한 것.

服部弘「社團法人 國際商事仲裁協會」判例タイムス728號(1990)246頁.

(10) 海事紛爭의 仲裁에 관한 것.

谷本裕範「社團法人 日本海運集會所」判例タイムス728號(1990)251頁.

松浦馨「海事仲裁手續の問題點」松井ほか編・國際取引と法(1988・名古屋大學出版會)261頁.

松浦馨「海事仲裁手續の問題點」海事法研究會誌88號(1984)1頁.

谷本裕範「わか國の海事仲裁の實務」國際商事仲裁協會委託論文(1978).

<表1> 仲裁手續 實情調查統計表(地方法院)

年 度	原 本 寄 託 事 件	執行判決請求事件						其他 事件					
		舊 新 既 濟 未				舊 新 既 濟 未				舊 新 既 濟 未			
		認 不 其		認 不 其		認 不 其		認 不 其		認 不 其		認 不 其	
		受	受	容	容	他	濟	受	受	容	容	他	濟
1953	2							1				1	
54	1								3	1			2
55	4							2	3			2	3
56	1	1				1		3				2	1
57	5	1	1					1	1				2
58	10	7	1		2	6		2		1		1	
59	1	6	2	5		1			1				1
60	1	1	1			2		1					1
61	4	2		1		1		1					1
62	2	1			1			1	1				2
63	1							2					2
64	6		1			1		2					2
65	7	1	2			3		2					2
66	7	3		1		2		2		2			
67	5	2	3	1	1	3			2	1			1
68	13	3	2	1	1	3		1			1		
69	14	3		1		2							
70	11	2	2	1		3			1				1
71	5	3		2		1		1	1				2
72	12	1	1			2		2	2				4
73	10	2	3			1	4	4	1	1	2		2
74	9	4				2	2	2	2		1	2	1
75	13	2	6			4	4	1	2			1	2
76	17	4	4	1		3	4	2	3				5
77	16	4	3			3	4	5	3	1	1	1	5
78	24	5	3	3		4	1	5			2	1	2
79	25	1	5	2		2	2	2	2		2		2
80	23	2	3	1		3	1	2	3	1	3		1
계	249	53	49	22	3	24	48	47	31	7	10	14	47

(주) 最高裁判所 事務總局 民事局調査(法律時報54 8號 100頁)

<表2> 民事·行政事件 新受件數

年度	訴訟事件	民事調停	其他事件
1986	362510	66643	2004674
1987	338004	58198	1933476
1988	292987	56865	1767344
1989	250326	56115	1523392
1990	229718	61007	1424468

* 기타 事件에는 督促手續·破産·保全事件등이 포함된다.

<表3> 仲裁件數

年度	件數
1986	231
1987	214
1988	230
1989	249
1990	314

* 件數는 後揭 일곱개 機關의 仲裁申請件數와 裁定件數 合算이다. 단 建設仲裁와 勞動仲裁의 경우는 1990年度分은 合算되어 있지 않고 또한 1989年度부터는 第2 東京辯護士會의 仲裁件數가 合算되어 있다.

<表4-1> 公害等調整委員會에 係屬된 사건의 處理件數

區分 年度	調 停			仲 裁			裁 定			其 他			計			
	受 付	終 結	未 濟	係 屬	新規 受付	終 結	未 濟									
70-71	8	1	7	0	0	0	0	0	0	0	0	0	8	8	1	7
72	14	2	19	0	0	0	0	0	0	0	0	0	21	14	2	19
73	36	8	47	0	0	0	0	0	0	0	0	0	55	36	8	47
74	20	26	41	0	0	0	6	2	4	0	0	0	73	26	28	45
75	45	22	64	1	0	1	2(1)	1	5(1)	0	0	0	93	48	23	70
76	55	43	76	0	1	0	2	3(1)	4	0	0	0	127	57	47	80
77	62	33	105	0	0	0	0	2	2	0	0	0	142	62	35	1
78	42	89	58	0	0	0	1(1)	2	1(1)	0	0	0	150	43	91	59
79	48	36	70	0	0	0	0	0	1	0	0	0	107	48	36	71
80	34	49	55	0	0	0	1	1(1)	1	0	0	0	106	35	50	56
81	45	33	67	0	0	0	0	0	1	0	0	0	101	45	33	68
82	48	40	75	0	0	0	1(1)	0	2	0	0	0	117	49	40	77
83	42	46	71	0	0	0	0	1	1	0	0	0	119	42	47	72
84	31	40	62	0	0	0	0	0	1	0	0	0	103	31	40	63
85	31	38	55	0	0	0	1	1	0	0	0	0	95	32	39	56
86	31	61	25	0	0	0	1	0	2	1	0	1	89	33	61	28
87	25	29	21	0	0	0	3	0	5	0	0	1	56	28	29	27
88	14	22	13	0	0	0	1(1)	6(2)	0	0	0	1	42	15	28	14
89	11	18	6	0	0	0	0	0	0	0	0	1	25	11	18	7
90	21	14	13	0	0	0	2(1)	1(1)	1	0	1	0	30	23	16	14
91	5	16	2	0	0	0	1(1)	2(1)	0	0	0	0	20	6	18	2
計	668			1	1		22	22		1	1		692			

(注) 1. 70 - 71년도 기간은 70년11월1일 - 72년3월31일이다.

2. 「裁定」()내의 數字는 原因事件數이고 內數이다.

3. 「其他」는 義務履行勸告사건이다.

<表4-2> 都道府縣審查會에서의 公害紛爭事件 接受 및 處理狀況

區分 年度	受付件數				處理件數					年 度 末 係屬件數
	合計	斡旋	調停	仲裁	合計	成立	中止	取下	其他	
70.71	25	8	17	0	15	10	2	2	1	10
71	25	3	20	2	14	8	4	1	1	21
72	30	6	23	1	28	19	6	3	0	23
73	24	4	19	1	27	22	5	0	0	20
74	21	3	18	0	22	9	9	4	0	19
75	22	3	19	1	21	12	5	4	0	20
76	25	1	24	0	15	12	1	2	0	30
78	22	2	20	0	21	11	6	4	0	31
79	22	1	21	0	24	12	7	5	0	29
80	27	0	27	0	22	13	8	1	0	34
81	19	1	18	0	21	4	13	4	0	32
82	15	0	15	0	23	13	8	2	0	24
83	28	0	26	0	19	12	5	0	2	31
84	20	1	19	0	24	14	5	5	0	27
85	29	0	29	0	21	11	9	1	0	35
86	23	0	23	0	26	18	6	2	0	32
87	28	0	28	0	27	15	10	1	1	33
88	26	1	25	0	22	11	7	4	0	37
89	36	0	36	0	23	13	6	4	0	50
90	55	0	55	0	39	9	23	5	2	66
91	43	0	43	0	43	15	20	8	0	66
계	563	34	525	4	497	263	165	62	7	

- (注) 1. 70.71년도 기간은 70년 11월 1일 ~ 72년 3월 31일이다.
 2. 70년 11월 1일 ~ 74년 10월 31일 간의 「和解 仲介」는 「斡旋」에 포함시켰다.
 3. 81년도 접수 數欄의 「斡旋」 1件은 職에 의한 「斡旋」이다.

(資料) 公害等調整委員會事務局調查

<表5>中央勞動委員會 處理狀況

年	總 件 數	一般		國營			斡旋					調停			仲裁		
		計	斡旋	計	調停	仲裁	計	取下	解決	中止	繼續 中	計	裁定	繼續 中	計	裁定	繼續 中
1985	13	13	13	13			13	5	7	1							
1986	8	8	8				8	4	4								
1987	8	8	8				8	2	6								
1988	11	7	7	4	4		7	3	3	1		4		4			
1989	21	2	2	19	10	9	2	1	1			10	9	1	9	9	

(注) (1) 1989년 이후는 1988년 10월1일에 中勞委와 國勞委가 결합함으로써 동년 10월 이후의 國營企業事件을 포함시켰다.

(2) 調整·仲裁는 모두 國營企業關聯事件이다.

<表 6> 中央建設工事 紛爭審査會 處理現況

年 度	種 別	申請受理件數			終了件數					次年度 移裁件數
		前年度	當該年度	計	和解	仲裁判斷	中止	取下	計	
85 年 度	斡族	0	2	2	0	-	0	1	1	1
	調停	19	35	54	7	-	16	6	29	25
	仲裁	37	5	42	1	7	-	6	14	28
	計	56	42	88	8	7	16	13	44	54
86 年 度	斡族	1	3	4	0	-	0	1	1	3
	調停	25	46	71	13	-	7	11	31	40
	仲裁	28	5	33	0	5	-	3	8	25
	計	54	54	108	13	5	7	15	40	68
85 年 度	斡族	3	12	15	2	-	2	7	11	4
	調停	40	26	66	11	-	18	4	33	33
	仲裁	25	10	35	1	7	-	1	9	26
	計	68	48	116	14	7	20	12	53	63
88 年 度	斡族	4	11	15	4	-	4	6	14	1
	調停	33	25	58	20	-	11	3	34	24
	仲裁	26	5	31	3	3	-	1	7	24
	計	63	41	104	27	3	15	10	55	49
89 年 度	斡族	1	19	20	7	-	6	5	18	2
	調停	24	20	44	9	-	6	5	20	24
	仲裁	24	9	33	6	8	-	2	16	17
	計	49	48	67	22	8	12	12	54	43

<表 7> 交通事故紛爭處理센터 利用狀況

	74	75	76	77	78	79	80
相談件數	990	1,812	2,381	2,625	4,237	5,146	6,599
新規	658	973	1,007	1,096	1,990	2,245	2,859
再來	332	848		1,519	2,247	2,901	3,740
被害者	534	795	843	923	1,687	1,891	2,411
利用者 加害者	115	165	147	161	292	326	415
内譯 雙方	9	13	17	12	11	28	33
不明							
示談成立件數	42	97	224	258	320	498	684
審査(裁定)에 의한 것	5	14	28	34	41	52	72

	81	82	83	84	85	86	87
相談件數	7,578	8,552	9,540	9,786	10,545	11,653	12,164
新規	3,152	3,476	3,641	3,738	3,789	4,166	4,354
再來	4,426	5,076	5,899	6,046	6,756	7,487	7,810
被害者	2,670	2,905	3,084	3,206	3,288	3,634	3,860
利用者 加害者	442	515	425	402	289	351	290
内譯 雙方	40	51	109	94	133	114	156
不明		5	23	36	69	67	48
示談成立件數	842	917	1,232	1,296	1,472	1,671	1,813
審査(裁定)에 의한 것	91	82	119	147	162	182	175

	88	89	90	91	total
相談件數	12,445	12,151	12,163	12,750	143,116
新規	4,260	4,056	3,970	4,224	53,654
再來	8,185	8,095	8,193	8,526	89,462
被害者	3,793	3,656	3,511	3,762	46,453
利用者 加害者	240	194	201	157	5,137
内譯 雙方	197	25	36	36	1,114
不明	30	181	222	269	950
示談成立件數	1,934	1,904	2,011	2,152	19,367
審査(裁定)에 의한 것	189	194	185	220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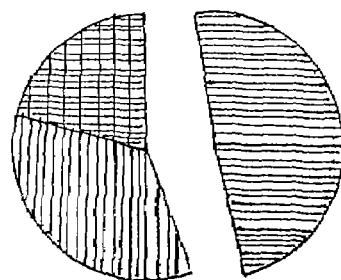
<表8-1> 第2 仲裁센타 仲裁申請件數 等 一覽表
(90.3.15~92.6.30現在)

1.仲裁申請件數 (1989年度3月, 8件) 計 211件

	1990年度	1991年度	1992年度
4月分	15	3	10
5月分	15	6	4
6月分	19	5	11
7月分	5	4	
8月分	5	6	
9月分	6	3	
10月分	22	6	
11月分	2	9	
12月分	7	5	
1月分	5	8	
2月分	5	9	
3月分	5	3	
4月分	111	67	25

<表 8-2> 同센타 仲裁應諾 狀況 {總數 178件 (回答대기를 제외)}

取下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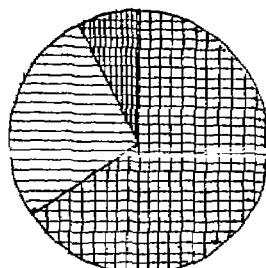
應諾 (46.6%)

不應諾 (33.1%)

<表 8-3> 同센타 應諾事件 解決內容 (總件數 62件)

仲裁判斷 (6.5%)

仲裁判斷(和解) (25.8%)



和解 (67.7%)

<表9> 國際商事仲裁協會 取扱仲裁事件數 終局區分

年 度	受理	取扱	判斷	和解	取下	係屬	斡旋件數
1985	7	17	1	2	2	12	279
1986	7	19	6	2	0	11	278
1987	4	15	2	0	0	13	333
1988	4	17	3	0	1	13	216
1989	8	21	4	1	0	16	257
1990	9	25	5	3	0	17	200
1991	6	23	2	1	0	20	230

<表10-1> 日本海運集會所의 仲裁·調停·鑑定取扱實績(件數)

()안은 國際事件數

年度	仲裁受理	仲裁判定交付	仲裁手續中 和解·取下	調整	船價鑑定	事項鑑定
1986	14(3)	1(1)	8(5)	0	110	2
1987	10(1)	3	7(3)	0	114	0
1988	11(2)	4(1)	8(2)	0	87	1
1989	6(2)	4(3)	3(1)	0	58	0
1990	9(4)	2(2)	9(6)	1(1)	269	0
1991	17(9)	2(1)	11(10)	0	58	1

<表10-2> 同仲裁受理件數의 種類別 分類

年度	定期傭船	航海傭船· 運送契約	船舶運行 委託	船舶 管理	船舶賣買	造船
1986	3	2	0	0	2	2
1987	1	0	1	1	0	1
1988	2	3	0	1	1	2
1989	1	3	1	0	1	1
1990	4	3	0	1	1	0
1991	6	5	0	0	3	3